

## 大田直轄市勞動綜合福祉館設置 및 運營條例中改正條例(案)

議 案 審 號	483
------------	-----

提出年月日 : 1994. 10.

提 出 者 : 大田直轄市長

### 1. 提案理由

一般 勤勞者의 便益增進 및 福祉施設로 建立한 “勞動綜合福祉館”

이 労動運動을 하는 少數 特定對象者를 指稱하는 施設로 誤解될

우려가 있어 이보다는 具體的이고 包括的인 뜻을 지닌 “勤勞者綜

合福祉館”으로 名稱을 改稱하여 모든 勤勞者들이 實費負擔으로

사랑방과 같이 利用할 수 있는 教育·文化·機能教育場으로 活

用코자 함

### 2. 主要骨子

가. 題名중 勞動綜合福祉館을 勤勞者綜合福祉館으로 함

나. 勞動綜合福祉館長을 勤勞者綜合福祉館長으로 함(案 第4條)

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

대전직할시노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대전직할시노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노동”을 “근로자”로 한다.

제 1조중 “노동”을 “근로자”로 한다.

제 4조 제 1항중 “노동”을 “근로자”로 한다.

[별 표] 제명중 “노동”을 “근로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대전직할시 <u>노동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</u>	대전직할시 <u>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조례는 ----- --대전직할시 <u>노동종합복지관</u> --	제1조(목적) 이조례는 ----- --대전직할시 <u>근로자종합복지관</u> --
제4조(관장) ①복지관에 <u>노동종합복지관장</u> (이하 “관장”이라한다)을 두며, -----	제4조(관장) ①복지관에 <u>근로자종합복지관장</u> (이하 “관장”이라한다)을 두며, -----
[별 표] <u>노동종합복지관시설사용료</u>	[별 표] <u>근로자종합복지관시설사용료</u>

大田直轄市勞動綜合福祉館設置 및 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

## 審 査 報 告

1994. 11. 7.  
文教社會 委員會

### I. 審查經過

가. 提出日字 및 提案者 : 1994. 10. 27. 大田直轄市長

나. 回 附 日 字 : 1994. 10. 29.

다. 上 程 日 字 : 第36回 大田直轄市議會 (臨時會)  
第 1次 文教社會委員會 (94. 11. 7)  
上程, 審查, 議決.

### II. 提案說明 要旨 (提案說明 : 保健社會局長)

#### 1. 提案理由

- 우리시 管內 3,479個의 事業體에 從事하는 12萬餘 動勞者들의  
便益增進을 圖謀하기 위하여 94. 7. 1 竣工된 「勞動綜合福祉館」  
이 勞動運動을 하는 小數特定對象者를 指稱하는 施設로 誤解  
될 憂慮가 있어

- 이보다는 具體的이고 包括的인 뜻을 지닌 「勤勞者 綜合福祉館」으로 名稱을 改正하여 모든 勤勞者들이 實費負擔으로 사랑방과 같이 利用할 수 있는 教育, 文化, 機能 教育場으로 活用코자 本 條例를 改正코자 함.

## 2. 主要骨子

- 가. 題名中 「勞動綜合福祉館」 을 「勤勞者 綜合福祉館」 으로 함.
- 나. 「勞動綜合福祉館長」 을 「勤勞者綜合福祉館長」 으로 함(案 第4條)

## III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: 金 鎮鎬)

- 本 綜合福祉館은 勤勞者들의 福祉向上과 勤勞意慾鼓吹등을 위하여 지난 89年 4月 大統領의 公約事業으로 그 建立이 推進되어 西區 屯山洞 1304番地에 國費 6億 1,100萬원과 市費 22億 3,100萬원등 總 28億 4,200萬원의 事業費를 投入, 延 建坪 993.6坪 (地下 1層, 地上 5層)의 規模로 着工 14個月만인 94. 7. 1 竣工된 綜合福祉館이 되겠음.
- 本 案件은 94. 8. 30. 第 34回 臨時會 第1次 當 委員會에서 綜合福祉館의 運營에 관한 事項을 一部 調整하여 議決된 案件으로써  
그 主要內容으로는 「勞動綜合福祉館」 의 施設名稱이 一般勤勞者 보다는 勞動運動을 하는 小數 特定勞動者를 指稱하는 施設로 誤解될 憂慮가 있어 包括的인 概念을 지닌 「勤勞者 綜合福祉館」

으로 施設名稱을 改稱하여 모든 勤勞者들이 實費負擔으로 사  
랑방과 같이 利用코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 
것으로 思料됨.

#### IV. 討論要旨： 없음.

#### V. 質疑 및 答辯要旨

質疑	答辯
<p>▲ 이기옹 의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조례제정당시 명칭지정에 따른 상부의 지시는 없었는지 ?</li> <li>불과 60여일만에 개정한다는 것은 행정의 누수현상이 우려되니 세심한 배려가 요망됨.</li> </ul> <p>▲ 서윤관 의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조그만 시설명칭부여까지도 중앙일변 도로 되고 있음은 유감스럽음. 당초계획된 노동단체의 입주가 제외된 데 따른 유휴시설의 활용계획은 수립 되었는지</li> </ul>	<p>▲ 보건사회국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대의 흐름상 '노동' 보다는 '근로자'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므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근로자들의 복지후생을 위한 탁아시설등을 확충할 계획임.</li> </ul>

VI. 審査結果：原案대로 可決

VII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음